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2016.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11 No.4 December 2016 투고일자: 2016년 7월 31일 심사일자: 2016년 8월 24일(심사위원 1), 2016년 8월 22일(심사위원 2), 2016년 8월 22일(심사위원 3)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25일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방안 연구

이 성 상*

- I.서 론
- II. 기술신탁의 이해
 - 1. 기술신탁 관련 법률의 변화
 - 2. 기술신탁 관련 제도의 비교
- Ⅲ.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필

요성과 효과

IV.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V. 결 론

^{*} 목원대학교 기술마케팅학과 조교수.

초 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 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기술신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의 신탁업 진입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활성화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기술 신탁관리업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는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하 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사회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 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 여 유인이 커졌으며, 특히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 활 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 신설과 그에 맞는 인가 요건 마련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섯째, 기술신탁 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 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 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하여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허가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I. 서 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는 기술신탁관리업을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분배, 추가 기술개발, 기술자산유동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신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2008년 3월 법 개정(2008년 9월 시행)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특허신탁관리업은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업으로 정의되어 있었다.1) 특허신탁관리업의 정의 조항 자체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학,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권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특허신탁관리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무체재산권을 수탁할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2)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영업행위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히 등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가 필요하지만

¹⁾ 특허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으로 볼 수 있다.

²⁾ 신탁업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35조의2 제1항은 단서조항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업과 달리 기술신탁관리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기술거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4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0년 7월 시행)에 따라 미활용특허의 거래 촉진이라는 목적이 강했던 특허신탁관리업이 삭제되고, 추가 기술개발, 기술자산유동화 사업에 관한 업무까지 포괄하는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탁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과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참여 시 고려사항을 이익의 형평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률 개정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술신탁 관련 법률의 변화 및 주요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3장에서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참여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기술신탁의 이해

1. 기술신탁 관련 법률의 변화

신탁이라는 법률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수탁 재산, 신탁 목적, 신탁 사무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기술신탁은 수탁재산이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³⁾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특허신탁, 기술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특허권과 기술자산에 적용한 것이다.⁴⁾

따라서 기술신탁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舊 신탁업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중「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신탁업자, 신탁회사)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도입된 특허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舊)신탁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른 제한만이 적용되었지만 기술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주용하도록 되어 있다.5)

기술신탁관리업의 근거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지만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에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을 명시한 것은 「(舊)신탁업법」이 처음이었다. 2005년 1월 「(舊)신탁업법」이 개정 (2005년 4월 시행)되면서 신탁회사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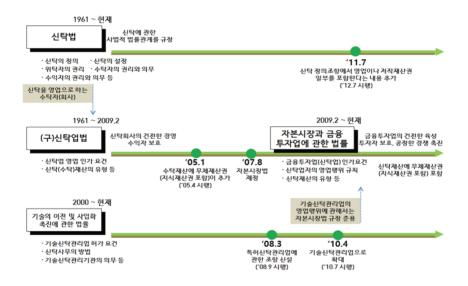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기술을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지식재산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⁴⁾ 정연덕,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특허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연구』제5권 제2호(2010,6), 29면.

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

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舊)신탁업법」이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이후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에도 2011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에 영업이나 저작재산권 일부를 포함시켰다. 〈그림 1〉은 기술신탁 관련 법률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기술신탁 관련 법률의 변화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수탁가능 재산에 제한이 없거나 수탁가능 재산에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2004년 12월 신탁업법을 개정되면서 수탁가능 재산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기술신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민간 신탁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신탁업자, 신탁회사)에 대한 규정 외에 우리나

라와 같이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된 별도의 기술신탁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 지는 않다. 일본에서 기술신탁 업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신탁은행은 미츠비스UFI신탁은행(三菱UFI信託銀行株式会社)이다. 미츠비스UFI신탁은행 은 미쓰이 신탁은행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신탁기관이면서 동시에 2005년 이후 다수의 특허권 신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표준신탁법 전(Uniform Trust Code) 제103조 제12항에 수탁재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일제정법상신탁법(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제102조 9항에도 수탁재산은 유형, 무형재산에 관 계없이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103조 8항에 개 인, 회사, 정부부처, 협회, 공기업, 정부 대행기관 등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 적, 상업적 독립체도 수탁자(trustee)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신탁제도 도입 자체가 늦어져서 2007년에야 제도화되었다. 2007년에 민법전 제3편 제14장에 신탁규정(LOI n° 2007-211 du 19 février 2007 instituant la fiducie)을 신설하였다. 신탁규정 제2011조는 신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물건이나 권리, 담보까지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기술신탁을 포 괄하고 있다. 부동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무체동산 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신탁규정 제2015조는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통화금융법 511-1조에 의한 금융기관, 518-1조에 의한 서 비스기관, 531-4조에 의한 투자회사, 보험법 310-11에 의한 보험회사, 변호 사직의 구성원 등이다. 변호사는 신탁규정 제정 당시에는 수탁자에 포함되 지 않았지만 2008년 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6)

2. 기술신탁 관련 제도의 비교

신탁업과 기술신탁관리업 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인가 또는

⁶⁾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비교사법』제19권 제3호(2012.8), 961면, 965면.

[표 1] 신탁업, 기술신탁업의 인가/허가 요건

구분	금융투자업 중 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법)
인가 또는 허가 기관	금융위원회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 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기관 유형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금 융기관, 외국 금융투자업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인·기관 또는 단체는 허 가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서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 자로 구성된 단체
자본 요건 (재정 능력)	- 인가업무 단위별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를 선택하는 경우 자기자본 필요금액은 최대 250억 이상, 최소 60억 원 이상)	-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 정 능력 (출연금이 50억 원 이상 또는 영업보증금 1억 원 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 보험 가입)	-
인력 요건	-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 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 을 갖춘 주요 직무 좋사 자와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 확보(예: 인가업무 단위4-1-1은 증권운용전 문인력 5명 이상,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등)	- 기술신탁관리업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임직원으로 확보(예: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분야에 3년 이 상 좋사한 경력자)	-
업무 (기술) 능력 요건	-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물적설비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위험관리와 금융사고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 기술신탁관리업 전담부 서 설치 -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 구비(외부전문 평가단 30인 이상 구비, 자동화된 기술선별평가 소프트웨어 보유 등)	- 사용료의 징수 및 분 배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대주주 요건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 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 회적 신용을 갖출 것(예: 대주주가 국내 법인인 경 우 자기자본이 출자하려 는 금액의 4배 이상 등)	-	-

허가 요건이다. [표 1]과 같이 신탁업 인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위한 자본 요건(재정 능력), 인력 요건, 업무 능력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이 신탁업 인가 요건과 차이가 있는 것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영업행위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신탁관리업은 특허 등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은 영업행위에 있어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준용하는 등 신탁업의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며,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기술신탁관리업의 이러한 속성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⁷⁾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의 특성 때문에 필요한 저작권집중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신탁이라는 틀을 빌리고 있을 뿐이며,⁸⁾ 신탁업이나 기술신탁관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신탁관리업은 영업행위에 있어 신탁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사무와 관련한 권리, 의무 등은 신탁업과 거의 동일하다. [표 2]는 신탁업, 기술신탁관리업의 신탁사무 에 따른 수익과 손실, 신탁사무 위탁, 신탁사무와 관련된 의무 등을 비교한 것이다.

⁷⁾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⁸⁾ 박준석,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스 티스』제151호(2015,12), 246면.

[표 2] 신탁업, 기술신탁업의 신탁사무 규정 비교

구분	수탁자 (신탁법)	금융투자업 중 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탁사무 에 따른 수익과 손실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가 생긴 경우 신탁재산 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예 외)	-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 의 보장을 할 수 없음 (연금, 퇴직금 지급 목 적신탁 예외) -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 -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음	- 신탁한 기술 등에 대하 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 익의 보장을 할 수 없 음 -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 익자 등에게 지급 또는 반환 -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음
신탁사무 의 위탁	-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 있음)	-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신탁계약과 집 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계약의 체결과 해 지업무, 신탁재산의 보 관·관리업무 등은 위 탁 금지)	-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사무 위탁자에 대 한 감독 의무 있음)
신탁사무 와 관련된 의무	- 선관의무 - 충실의무 - 공평의무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의 구분 관리 - 서류 작성 · 보존 및 비 치 의무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 선관의무 - 충실의무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수익자의 요청 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공시 의무 등	- 선관의무 - 충실의무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관리하는 기술 등의 목록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공고,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Ⅲ.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필요성과 효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단체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홍원,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 등 5개 기관이다. 9 기업의 기술획득 원천으로써 기술신탁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신탁기술이 기업 등으로 이전되는 비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탁기술 중기술이전 된 비율은 5.27%('14년 기준)로 높지는 않다.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기술신탁관리기관뿐만 아니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즉,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인가를 받았다면 신탁업자로서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이 필요한 이유는다음과 같다.

첫째,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인가 업무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탁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기술신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의 신탁업 진입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활성화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무체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는 존재하지만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 는 인가 업무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신탁

⁹⁾ 한국산업기술진홍원(舊 한국기술거래소)과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舊 대덕특구지원본부)은 각각 2008년 12월과 2009년 7월에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에 한국보건산업진홍원(2010년 10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2013년 5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3년 5월)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무체재산권을

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서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위해 기술신탁과 관련이 없는 증권운용 전문인력, 부동산운용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고, 최소 6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된다. 반면에 신탁회사의 영업행위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인가업무 단위로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자산유동화 등 기술신탁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신탁회사들이 기술신탁업무를 취급할 가능성은 낮으며,11) 신탁회사의 영업행위를 통해 기술신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 등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가 필요하고, 현행 법률에서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가 필요하고, 현행 법률에서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은 기술신탁관리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신탁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시장 지향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관리과제 중 하나로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을 설정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 확대 및 수탁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업무 단위는 4-1-1, 4-1-2, 4-12-1, 4-12-2이다. 4-1-1과 4-1-2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4-12-1과 4-12-2는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수탁할수 있다. 4개 인가업무 단위의 최저자기자본은 각각 250억, 125억, 60억, 100억 원이다.

¹¹⁾ 손승우·전응준,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제3권 제2호 (2008,12), 56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과제로 일정 여건을 갖춘 민간 기관으로 기술신 탁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¹²⁾

셋째, 관리형 신탁에 국한되었던 특허신탁관리업에 비해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허신탁관리업은 미활용특허의 거래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수탁재산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업무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허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관리형신탁¹³⁾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월에 특허신탁관리업이 삭제되고, 추가 기술개발, 기술자산유동화 사업에 관한 업무까지 포괄하는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신탁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모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의 기술신탁 사업 참여 유인이 커졌다.

특히 자산유동화형 기술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신탁의 실익은 수탁자에 의한 기술자산의효율적인 관리, 도산격리 기능과 함께 수익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특히, 특허권 등 기술자산은 기술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이라는 형태로전환되고,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 이 때문에

¹²⁾ 한국생산성본부,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34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위탁자(수익자 포함)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 탁이거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을 관리형 신탁으로 정의하고 있다.

¹⁴⁾ 권재열, "자금조달 목적의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19권 제4호(2006,12), 228면; 맹수석,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증권법연구』제7권 제2호(2006,12), 254면; 김병연, "자산유동화와 지적재산권신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기술·특허권의 유동화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제26권 제1호(2007), 259면.

관리형 기술신탁은 장래에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자산유동화형 신탁은 장래에 그 활용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5)

자산유동화형 기술신탁은 자산유동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수 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과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증권 발행 신탁은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한 신탁을 의미한다.16) 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 증권 발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탁법의 수익증권발행신탁 규정에 따라 모 든 종류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서 수익증권의 발행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7)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자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 등 유동화 증권 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술신탁관리업의 영리법인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 른 자산유동화를 위해 수익증권 등 유동화증권 발행이 어렵다.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를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 기술신탁관리업의 역 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 의 활성화에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신 탁관리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관리형 신탁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형 신탁도 포섭하고 있으며,18)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수의 특허권 등을 일괄하여 수익 권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투자자들은 위험분산의 효과 를 얻을 수 있어 자산유동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넷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시 사후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¹⁵⁾ 박준석, 앞의 논문, 241~242면.

¹⁶⁾ 신탁법 제78조 제1항, 2항.

¹⁷⁾ 조영희,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한 자산유동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Bulls Review 2012-12월호(2012,12), 45면.

¹⁸⁾ 박준석, 앞의 논문, 243면.

있다.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은 조인성 등(2016)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성 등(2016)은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된 기술신탁관리업무의 구조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을 기술신탁관리 전문업체(다수의 영리법인)로 확대하였을 때 사후후생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된 기술신탁관리업의 구조 하에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술신탁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수익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최적의 상태가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최적의 상태가 아님을 보였다. 이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신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

반면에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먼저,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을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고려하여 강화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지식재산 전문기업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효과 또는 사회후생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는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리법인 등에 대한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민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료 · 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지원하는 것이 이익의 형평이나 균형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한다.

¹⁹⁾ 조인성·서지희·배성주, "기술신탁의 경제적 효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산 업재산권』 제49호(2016.4), 218~220면.

IV.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앞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 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 여 허용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기술거 래, 기술평가 등 기술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 인이 기술신탁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기술신탁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영리법인이 기술신탁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탁업 인가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를신설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탁업인가업무단위의 특성상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하는 인가업무단위가 존재하지않기때문에 기술거래, 기술평가등 기술신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이신탁업인가를 받기위해서는 기술신탁과 관련성이 낮은인력(증권운용 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등)확보가필요하고,최소 60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이필요한문제가있다.따라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에무체재산권만을신탁재산으로할수있는인가업무단위를신설하고, 그에맞는자본요건(재정능력),인력요건,업무능력요건등을제시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탁업 인가 요건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은 기술신탁관리업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신탁업) 인가 요건이 아닌 별도로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리법인 등에 대해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것이 이익의 형평 또는 균형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탁업 인가 요건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특허료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허용 시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인력 요건, 업무 능력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본 요건(재정 능력)에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즉,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신탁재산(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 1개를 수행하는 신탁업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때문에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최소 요건으로 적용한 것이다.

둘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이되는 영리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사업화전문회사, 제35조에따라지정된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의 가장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은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기술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기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그 대상은 기술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이되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및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동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도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7조(인력요건 등) ④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제7조(인력요건 등) ④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동일) 2. (동일) 3.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V. 결 론

기술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특허 등 기술자산에 적용한 것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2008년 특허신탁관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특허신탁관리업은 2010년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술신탁관리업은 영업행위에 있어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기술신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인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탁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 기술신탁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이 신탁업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에 신탁회사의 영업행위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금전, 증권,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신탁회사를 통한 기술신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서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은 기술신탁관리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기술신탁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는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

성하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일정 여건을 갖춘 민간 기관으로 기술신탁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특히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서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매우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 질문은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기술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이 기술신탁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 등에 대해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것이 이익의 형평 또는 균형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를 신설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 개정안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금융투자 업의 인가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하여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허가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 신탁관리업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한국생산성본부,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국 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국내 학술지〉

- 권재열, "자금조달 목적의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19권 제4호(2006)
- 김병연, "자산유동화와 지적재산권신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기술·특허권의 유동화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제26권 제1호(2007).
- 맹수석,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2006).
- 박준석,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스 티스』제151호(2015).
- 손승우·전응준,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2008).
- 정연덕,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특허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연구』제5권 제2호(2010).
-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비교사법』제19권 제3호(2012).
- 조영희,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통한 자산유동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Bulls Review』 2012-12호(2012).
- 조인성·서지희·배성주, "기술신탁의 경제적 효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산업재산권』제49호(2016).

The Study on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for Profit-making Legal Entities

Lee Seonasana

A company or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n engage in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Despite this article, it is claimed that government shall grant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to profit-making legal ent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and legal issue surrounding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for profit-making legal entities.

By the nature of the structure of authorized business unit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hard to expect a trust compan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 technology trust busines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trusters are granted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can accept for trust only technolog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participation in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of by a profit-making legal entity is in accord with the government's IP policy and is helpful in activating asset-backed securitization using beneficial interest in a managerial trust.

If profit-making legal entities are included in technology trusts, it is better to limit entities to technology trading agencies, companies specializing in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evaluation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An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12(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urther requirement that a profit-making legal entity shall have its own equity capital equivalent to or more than 500 million won.

Keyword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Technology trusts, Trust Company, Asset-backed Securitization, Profit-making Legal Entity, Intangible Property Right